의약품 안전성서안

○ 발행일자 : 2010. 8. 17.

○ 관련 제품

- 제품명: "미드론정(미도드린염산염)"[제조업자: 명문제약(주)]

- 성분명 : 미도드린염산염(midodrine hydrochloride)

- 효능·효과 : 저혈압(기립성, 본태성, 증후성)

○ 주요 내용

- 미 FDA, 저혈압(기립성) 치료제인 미도드린(midodrine) 제제에 대하여, "승인 후 유익성 입증 연구 미실시"사유로 "승인 철회"를 제안

○ 정보 단계 : 평가 중

국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 FDA에서는 기립성 저혈압 치료제로 승인된 미도드린염산염 (midodrine hydrochloride) 제제에 대하여, "제품 승인 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유익성 입증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품 승인 철회를 제안하였으며, 현재 미도드린 제제를 복용증인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지말고 다른 치료제에 관해 의료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는 신속승인절차1)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 승인시 의무화되어지는 제품의 유익성 증명을 위한 추가적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유익성 증명에 실패할 경우 FDA가 제품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데, 신속승인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미도드린 제제 제조업체가 현재까지 동의약품의 임상적 유익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¹⁾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대리결과변수(surrogate endpoint : 혈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같은 임상적 표지로 생존기간의 연장 또는 질병 경감등 실제 임상적 유익성을 예상해주는 것으로 간주)를 기준으로 승인 후 유익성 증명 임상시험 의무 부과

또한, 미 FDA는 이와 같은 시판권 철회를 제안하면서 관련 제조 업체에는 공청회 신청 및 자료(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는 바 제출된 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후 최종 시판권 철회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동 제제에 대하여 국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필요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 안전성 및 유익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의·약사님들께서는 우리청의 검토 및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동 내용에 충분히 유의하여 다른 처방 대안이 없는 심각한 질병 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있는 환자 등 반드시 사용이 필요할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하여 주시고 가급적 대체약품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미도드린" 성분 제제로서 명문제약(주)의 "미도드 린정(미도드린염산염)" 1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동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 품목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시는 경우에는 우리청(의약품안전정보TF팀, 전화: 02-3156-8033, 팩스: 02-3156-8176, 이메일: adr@korea.kr, 홈페이지: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 8. 17.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장 병 원